

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7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21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사유

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·보완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수도사용자등이 신고사항 미이행시 이행토록 권고(안 제18조)
- 나. 수도관리의 책임은 군수이므로 사용자에게 대한 책임규정을 삭제(안 제21조)
- 다. 급수장치에 관한 승계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승계하는 부분은 삭제함.(안 제22조)
- 라.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부분은 삭제함.(안 제25조)
- 마. 일시급수 사용요금의 선납은 법령의 미근거로 삭제함.(안 제35조)

3. 참고 사항

근거 행정규제정비

입법예고 : 2000.11.17 ~ 2000.12.6. 결과 → 특기할 사항 없음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중 “직권으로 급수중단”을 “미이행 사항은 신고토록 권고한 후 불이행시 급수중단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중 “선량한 관리자로서”를 삭제하고,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

제22조제2항, 제25조제2항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8조중 “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”을 “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8조(신고) ①(생략) 1.~8.(생략)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</p> <p>제21조(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)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②~③(생략)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, 고용인,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제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.</p> <p>제22조(권리의무의 승계) ①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제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.</p> <p>제25조(요금의 징수) ①(생략)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.</p> <p>제35조(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)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.</p> <p>제38조(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)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,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p>	<p>제18조(신고) ①(현행과 같음) 1.~8.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미이행 사항은 신고토록 권고한 후 불이행시 급수중단 ----- 제21조(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) ①----- (삭제) ----- ----- ②~③(현행과 같음) ④(삭제)</p> <p>제22조(권리의무의 승계) ①(현행과 같음) ②(삭제)</p> <p>제25조(요금의 징수) ①(현행과 같음) ②(삭제)</p> <p>제35조(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) ①(삭제) ②(삭제)</p> <p>제38조(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) ----- -----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----- ----- -----</p>